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52
----------	-------

발의연월일 : 2026. 4. 2.

발 의 자 : 이주희 · 안도걸 · 김 현  
송재봉 · 이훈기 · 정진욱  
김기표 · 박정현 · 김선민  
전종덕 · 손 솔 · 정혜경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킹 등 침해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침해사고 관련 정보에 대한 기업과 정부 간의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기업 간 공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침해사고정보 공유체계를 법률에 명시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 신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침해사고정보 공유체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도 자발적인 가입을 유

도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신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50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에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공유하는 침해사고정보 공유체계(이하 “공유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⑪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공유체계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제4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공유체계에 가입하여야 한다.

⑫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공유체계에 가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1.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기술지원
2.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비용지원
3. 정보보호 관련 기술개발 자금 지원

4. 정보보호 전문인력 교육훈련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⑬ 제10항에 따른 공유체계의 구축·운영, 제11항에 따른 공유체계 가입 및 제1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공유체계에 가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1.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기술 지원

2.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비용지원

3. 정보보호 관련 기술개발 자금 지원

4. 정보보호 전문인력 교육훈련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⑬ 제10항에 따른 공유체계의 구축·운영, 제11항에 따른 공유체계 가입 및 제1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